

'22. 8. 10. 부터 시행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

-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작업 근로자 휴식 부여 -

- 그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온열질환 예방조치로는 물, 그늘(휴게시설), 휴식 등 3대 기본수칙을 규정 하였으나,
 - 여름철 실외온도와 비슷한 실내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'휴식' 부여·제공을 적용하기 어려웠음
 - 이에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는 실내작업 근로자에게도 '휴식'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

☑ 개정 내용(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(휴식등))

< 현 행 >

< 휴식의 제공 >

- 고열·한랭·다습 작업을 하거나,
- **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** 작업을 하는 경우
 -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

< 개 정 >

< 휴식의 제공 >

- (현행 유지)
- **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**
 -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

☑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가이드(실내작업장 위주)

물

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.

그늘
(휴게시설)

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**휴게시설***을 마련하여야 합니다.
* 선풍기, 냉풍기, 이동식 에어컨 등의 설치를 통한 적정온도 유지

휴식

폭염 특보시 1시간 주기로 10~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체감온도 33℃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**매시간 10분**, 체감온도 35℃ 이상 또는 폭염경보 발령 시 **매시간 15분**
※ 체감온도 38℃ 이상 시 **매시간 15분 이상씩** 휴식하기